

2022년도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관련 안내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관련하여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심사평가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2022년도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관련 FAQ

1. 사전 준비 및 신청 관련

1. 실시가능직종 관련

Q1

실시가능직종 신청 기간이 2022년 1월 10일(월) 10:00 ~ 4월 22일(금) 18:00까지인데 5월 2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4월 22일까지 직종 신청만 하면 되나요?

A

☞ **실시가능직종은 4월 22일 18:00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심평원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직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22일 이후에는 실시 가능 직종의 신청 및 수정이 불가하니 기간 내에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 시점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승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획조정 공고 3쪽 참고).

Q2

실시가능직종 신청 후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접수중입니다. 처리 기간과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실시가능직종 검토 절차는 1차 검토(심평원) - 2차 승인(관할 고용센터)으로 처리 되면 승인 전까지는 시스템상 '접수 중'으로 표시됩니다. **실시가능직종 승인까지 5~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훈련기관 유형 변경을 하면 실시가능직종이 모두 취소된다고 하는데, 실시가능직종 신청 기간(22.4.22.18:00)이 종료 후 훈련기관 유형을 변경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훈련기관 유형이 변경되어 기존에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직종에 한하여 기관유형 변경일 기준 15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설명회 자료집 1권 24쪽 참고).

Q4

원격훈련기관입니다. 금번 실시가능직종에 신청해야 하나요?

A

☞ 원격훈련기관의 경우 실시가능직종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격훈련과정 심사와 관련된 상세 안내는 심평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02-6943-4030)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Q5

기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시가능직종 신청해야 하나요?

A

☞ 기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이 있으실 경우, 동일한 직종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심사평가시스템-인증평가-실시가능직종관리'에서 꼭 현재 보유중인 실시가능 직종 현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6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및 심사평가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A

☞ www.hrd.net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 > [마이 서비스]
① [마이 서비스] > [회원서비스 관리] > [행정지원 이용신청] > [행정시스템 이용신청] > [행정시스템이용신청 목록] - 신청/승인/반려 등 현황 확인 가능
② 행정지원시스템 및 심사평가시스템은 행정지원 이용신청 승인 후 [행정시스템 다운로드]를 통해 가능
*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 시 심사평가시스템 동시 설치

2. 자체평가보고서 등 현장평가 증빙자료 관련

Q7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통해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고,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평가참여신청서]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통해 첨부파일(한글파일 형식, 10MB) 형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은 설명회 자료집 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는 현장평가 방문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상세 경로】

- 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심사평가공고] > [훈련기관평가]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정정)]
- ②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혹은 인증평가)] > [공지사항/Q&A] > [공지사항]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정정)]

Q8 현장평가에 활용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양식 및 서식이 별도로 제공되나요?

A

☞ 훈련 운영에 필요한 서류(증빙자료)는 각 훈련기관의 형태 및 운영 상황,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통 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현장평가에서는 출력된 서류, 책자 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평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가항목별 목적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적합한 증빙자료 형태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2022년 현장평가 필수 대상은 아니므로 현장평가를 받지 않을 예정인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 2022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나, **현장평가 미참여 기관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기관의 자율점검 및 자체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10

1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전담인력 현황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A

☞ 1인 훈련기관의 경우, 가장 비중있게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역할별 중복 인정 불가)

Q11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후 훈련전담인력이나 훈련시설·장비 현황 등이 변경되었다면 자체평가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나요?

A

☞ 자체평가보고서는 심사평가 접수 시 1회 제출하며, 변경된 훈련전담인력이나 훈련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당일** 훈련기관 현황 소개 시 **평가위원에게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는 평가일 기준 현장에서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평가 신청 관련

Q12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어느 경로로 심사평가를 신청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으로 운영하는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평가 일원화' 경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만 운영하는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평가'로 신청하시고 별도 공고에 따라 과정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동시에 운영하시려는 경우, '심사평가 일원화' 경로로 신청하시고, 별도 공고에 따라 특화훈련 과정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2) 원격훈련기관의 경우 '인증평가' 경로로 신청하셔야 하며, 과정심사는 e-simsa시스템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A ※ (유의사항 3)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경우는 인증평가는 면제이므로 '과정심사' 경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유형	훈련유형	신청 경로		신청 메뉴
		인증평가	과정심사	
집체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일반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시스템 > 심사평가일원화 경로로 신청		심사평가 일원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원격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심사평가 시스템 > 인증평가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	인증평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심사평가 시스템 > 인증평가	e-simsa시스템	인증평가
공공직업 훈련시설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 시설 중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 받은 기관	-	심사평가 시스템 > 과정심사	과정심사

Q13

훈련기관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심사평가에 참여를 위해 하여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 ☞ 훈련기관 사전 준비사항(설명회 자료집 1권 13~14쪽 참고)* 훈련기관 사전 준비 사항 절차: HRD-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후 발급 > 실시가능직종 신청 후 승인 > NCS확인강사 등록 > 시설·장비·교재 등록 > 심사평가 신청
- A ☞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심사평가 HRD-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훈련기관번호(9자리)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실시가능직종 승인 'Q1 과 Q2' 참고
- ☞ NCS확인강사 등록 (설명회 자료집 1권 25쪽 참고)

Q14

정정보완 기간은 언제이며, 정정보완 기간에 훈련과정 심사 신청서를 회수할 수 있나요?

- ☞ 정정보완 기간은 6.2~6.7. 18:00까지이며 2022. 4. 18.(월)부터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시범 사용이 가능합니다.(임시저장 및 테스트 기능 등 사용). 특히 올해 심사평가부터는 **정정보완 기간에 과정심사 신청서 회수가 불가하여 훈련과정명, 훈련 내용,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정정보완 기간에는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시설, 장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재정건정성 평가자료 정정에 한하여 보완 가능합니다(계획조정 공고 4쪽 참고).
- A

Q15

HRD-Net에 시스템에 통합심사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과정심사 항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계획조정 공고 5쪽 참고).
- A

Q16

심사평가 신청기간에 재정건전성 평가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정정보완 기간(6.2.~6.7.18:00까지)내에 재정건전성 평가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계획조정 공고 8쪽 참고).

Q17

원클릭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자동목록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와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홈페이지를 활용한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속(본점·지점)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부등본 등의 관계증명 서류를,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납세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 **원클릭 시스템 추가자료 제출 항목에 반드시 별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계획조정 공고 8쪽 참고).

Q18

설명회 자료집은 기관에서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 설명회 자료집 파일은 4월 13일(수)에 심평원 홈페이지 > 소통마당 > 훈련기관평가 > 자료실에 게시되었으며,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설명회 자료집 책자는 4월 22일부터 우편 배송이 시작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조정 공고 41쪽 참고).
자료집 게시 위치] ksqa.or.kr → 소통마당 → 자료실(훈련기관평가)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1~4권)

2. 심사평가 기준 및 운영 관련

1. 훈련과정 심사

Q19

올해부터 훈련과정 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심사 신청 대상 및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 그간 연 2회 실시했던 훈련과정심사가 올해부터 연 1회 실시되며, **이번 과정심사 신청 대상은 2023년 운영 실업자 국기, 실업자계좌제, 재직자계좌제, 사업주 위탁 훈련과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해당 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2022.5.2.~5.11. 18:00까지 2023년에 운영할 과정의 심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20

과정심사 시 신청 제한 분야가 있나요?

A

☞ **정부지원 훈련 목적에 맞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77~78쪽 또는 **설명회 자료집의 신청제한 주의 키워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1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은 이번 심사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A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등 **11개 국기-과정평가형 연계 과정은 이번 심사평가 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해당 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2.5.2.~5.11. 18:00까지 심사평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22

2023년 운영 과정심사부터 조건부 심사 항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A

☞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재에 한해 적용되었던 조건부 항목이 훈련방법(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훈련교.강사,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재로 확대되었습니다(계획 조정 공고 1쪽 참고).

Q23

국기직종이 81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국기직종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국기직종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A

☞ 제외된 국기직종은 국기훈련으로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하므로 올해 국기심사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기신청한도를 산정할 때는 제외된 직종의 전년도 운영 실적을 산정하여 한도를 부여하였으므로, 운영 가능한 다른 국기 직종(국기진입요건 충족 직종, 공고문 10쪽)으로 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문 18쪽 참고).

☞ 제외된 국기직종과 연계된 NCS 소분류 기준으로 계좌제훈련과정을 심사 신청할 경우 계좌제훈련의 성과적정성 심사 기준에 따라 과정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획조정 공고 16쪽 참고).

Q24

혼합훈련으로 과정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 훈련대상별로 편성 기준이 다르며, 원격보조훈련은 반드시 전공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쌍방향훈련이나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만으로는 편성이 불가하며, 22년 심사부터 혼합훈련의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연계성 심사가 강화되어 기존에 승인 이력이 있는 과정도 운영 계획이 미흡한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혼합훈련 심사 신청 전에 심평원 스마트훈련과정심사센터 (☎02-6943-4030)에서 실시하는 혼합훈련 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1. 국기훈련: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이며 최소 5% 이상 ~50%이하로 원격보조훈련 편성
2. 실업자 계좌제: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며 10%(최소 20시간 이상) 이상 50% 이하로 원격보조훈련을 편성
3. 재직자 계좌제: 총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원격보조훈련시간이 10% (최소 20시간 이상)~50%로 편성(계획조정 공고 12쪽, 15쪽 참고)

Q25 성과적정성 및 인력수요심사의 가점이 변경 된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 A**
- ☞ 혼합훈련운영(2점)·개발(1점) 가점과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가점(2점)에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혼합훈련 관련 가점은 **혼합훈련 운영 실적(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이 있는 직종의 혼합훈련 과정에 한하여 2점 가점을 부여**하며, 혼합훈련 개발 가점은 혼합훈련 운영 실적이 없는 직종의 혼합훈련 신청 과정에 대해서 1점을 부여합니다. 즉, 혼합훈련 관련 가점은 혼합훈련으로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또한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가점 2점은 제외**되었으며, 과정 선정 단계에서 동점 발생 시 권장+선택 등 국기편성 가이드 활용 비율이 높은 과정을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획 조정 공고 17쪽 참고)

Q26 일원화로 인해 인증과 과정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정심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인증유예가 되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A**
- ☞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과정심사 부적합(선정 제외) 판정됩니다(계획조정 공고 33쪽 참고)

Q27 조정공고문 2쪽을 보면 결과발표일이 10월 21일이며, 이의신청 발표가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 A**
- ☞ 22년도 심사평가에서 선정하는 과정은 2023년 운영 과정이므로 심사 결과가 10월 21일에 공고된다 하더라도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023.1.1.~2023.12.31.입니다. 결과 발표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 및 조건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사전 홍보(HRD-Net 시스템 활용) 및 자체적인 훈련생 모집은 가능하나, 실시신고 및 과정 운영은 2023.1.1.부터 가능합니다.

Q28

자체콘텐츠를 활용한 혼합훈련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체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과정심사 시 혼합훈련 과정의 원격훈련 콘텐츠는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A

☞ 올해부터 혼합훈련 과정심사의 집체-원격 교과 연계성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자체 또는 조달콘텐츠 활용 과정은 2022.6.30.(목) 18:00까지 콘텐츠 제출(LMS에 탑재)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콘텐츠를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합니다. 단, 공공콘텐츠만 활용하는 훈련과정은 콘텐츠 제출(탑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2년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에 따라 **자체 또는 조달콘텐츠의 추가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022.6.30. 18:00까지 콘텐츠 제출을 완료해야 함

Q29

민간 LMS 활용 훈련기관입니다. 민간 LMS 지원사업이 2022.12.31.로 종료되는데 2023년 운영 혼합훈련 과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LMS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

☞ 민간 LMS 사업의 종료에 따라 2023년에 혼합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온라인평생교육원의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거나,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LMS를 구축 또는 임대하시면 됩니다(설명회 자료집 1권 120~121쪽 참고).

Q30

올해 과정심사 시 유효기간 연장 심사는 실시하지 않는건가요?

A

☞ 2022년부터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 승인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계좌제훈련, 국기훈련, 사업주위탁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22.5.2.~5.11. 18:00까지 과정심사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2. 역량평가(훈련성과) 관련

Q31 성과평가 대상 훈련생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라 주 훈련대상에 관계없이 인증평가 대상 훈련 (2021년 종료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단, 고용유지기간은 산정기간이 다르므로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Q32 재직자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도 취업률과 고용유지기간을 평가받나요?

A 재직자훈련을 운영한 기관이더라도 40시간 이상(사업주 위탁훈련 제외)의 과정에 실업자훈련생이 있었다면 일반취업률과 고용유지기간을 평가합니다.
단, 평가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모든 훈련생이 재직자에만 해당되어 일반취업률과 고용유지기간의 평가가 불가하다면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Q33 성과평가 지표 일반취업률 가중치 부여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표의 유형에 따라 일반취업률 가중치 부여 대상을 구분합니다.

구분	유형	대상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요건심사형	대상O
	선발형(청년)	대상X
	선발형(비경활/저소득층)	대상O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저소득층	대상X
	특정계층	대상O
	청년	대상X
	중장년	대상X

각 유형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할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4 조건부 인증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평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로 조정되나, 성과평가 배점(60점)의 40%(24점) 미만 획득 시 '조건부 인증' 부여합니다.

A 단, 2021년 조건부 인증기관은 2022년도 평가에서도 조건부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서는 조건부 인증이 없을 예정입니다.

3. 역량평가(현장평가) 관련

Q35 현장평가 대상직종은 NCS분류 중 어느 단위로 선정되나요?

A ☞ 현장평가 대상직종은 NCS 소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NCS 소분류 내 세분류 간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직종은 소분류보다 작은 단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36 선정된 직종은 모두 다른 직종이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직종은 기관의 운영실적, 과정신청 수, 현장검증 필요여부 등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의 직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된 직종이 동일 직종인 경우, 기관의 직종이 1가지인 경우 등 각 기관별 운영 및 준비현황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 직종의 수는 1~3개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기관마다 선정된 직종의 수는 모두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7

현장평가 대상 직종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훈련기관이 직접 직종을 우선순위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1, 2순위에 대한 부분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선정하며, 3순위에 대한 부분은 훈련기관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현장평가부터는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직종 중 최대 3개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은 공고문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대상직종을 파악하여 현장평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평가 대상직종 선정은 집체훈련기관에만 한함

Q38

선정된 직종의 현장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전담인력 등 전반적인 훈련실시역량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인 현장평가의 취지에 따라, 직종 단위의 훈련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Q39

현장평가 시 무조건 3개 직종 확인하나요?

A

☞ 아닙니다.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직종 중 최대 3개의 직종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대상 실적 유무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 직종 선정 순위가 달라지나, 과정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종은 우선적용하여 현장 검증을 받게 됩니다.

(예시) 현장평가 대상직종 선정 예시

구분	선정방식	예시
훈련실적이 높은 직종	실시인원이 높은 직종 선정	(예시) 130101 100명, 020101 50명 → 130101 선정
신규로 신청한 직종	신규 신청과정 유무에 따라 직종 선정	(예시) 130101 5과정, 020101 2과정 신청 시 → 130101 선정 (예시) 신규로 신청한 직종이 없을 경우 미선정
기관 선정 직종	기관 선택유무에 따라 직종 선정	(예시) 훈련기관이 선택한 해당 직종을 선정 (예시) 훈련기관이 선택한 직종이 없는 경우 미선정

Q40 현장평가 일정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훈련기관의 현장평가 일정이 확정되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과 관리자 및 평가담당 연락처(메일 및 SMS)로 발송**됩니다.

관리자 및 평가담당자 정보 입력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HRD-Net을 통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된 일정은 변경 불가하며, 지정된 평가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개별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되어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 **【현장평가 일정 확인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인증평가 > 역량평가 조회

** **【평가담당자 정보 변경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인증평가 > 일원화 평가 신청 > 평가신청 조회 > [검색] 버튼 클릭 > [평가명] 버튼 클릭 > 평가참여신청서 > [담당자정보변경] 버튼 클릭

Q41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몇 명이 방문하시나요?

A

☞ **총 3~5명의 평가위원이 방문**하여 평가하게 되며, 현장평가 대상 직종에 따라 내용 전문가의 인원 수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 시 참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42 폐업, 이사 등 기관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기관 정보 변경 신청*해주시고 현장평가 대상 훈련기관의 경우, 현장평가 주소 변경 신청**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 정보 변경 경로】**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변경신청 (정보변경 신청 항목 [체크박스] 선택 후 변경내역 입력 & 정보변경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현장평가 주소 변경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인증평가 > 일원화 평가 신청 > 평가신청 조회 > [검색] 버튼 클릭 > [평가명] 버튼 클릭 > 평가참여신청서 > [현장평가주소변경] 버튼 클릭

Q43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훈련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 ☞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을 함께 운영하고자 할 경우,
1. 훈련기관관리번호를 집체 및 원격훈련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기관유형 및 훈련유형에 따라 집체훈련 관련 심사평가와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훈련시설에 대한 기준은 집체훈련에 경우 NCS 훈련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훈련 시설>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A

Q44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이란?

- ☞ 원격신규기관은 현장평가 지표와 더불어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항목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에 대하여 LMS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 및 기준은 반드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

※ 현장평가 점수가 60점을 상회하더라도 인정요건에서 '미충족' 항목이 1개라도 발생할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 운영인력 요건 중,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 확보'는 아래의 관련 요건

Q45

①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을 포함한 인원 수 인가요?

· (관련 요건)

- ①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②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 되어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A

☞ 네, ①번 요건인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에 해당하는 인원 1인을 포함하여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Q46

☞ 운영인력 요건 중,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관련 요건)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A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에 적합한 경력, 자격 보유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훈련기관 조직도(업무분장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7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에서 '미충족'으로 판정이 된 항목이 있을 경우 최종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항목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판정사유)은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에서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 판정될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피드백보고서는 공개되나, 평가영역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48

운영인력 요건 ②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관련 요건)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A

☞ 훈련기관에서는 현장평가일 이전 가입 신고를 완료하여 현장평가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시 및 출력일시*는 반드시 현장평가 당일 또는 현장평가 전일이 되어야 합니다.

* 발급일시 및 출력일시의 경우 증빙자료 출력 시 문서 내에 자동 등록

- (발급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현장평가 당일 또는 현장평가 전일 시점으로 발급(현시점 발급가능)

-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Q49

전산시스템을 업체에 외주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련한 사항은 해당 위탁업체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설명하여도 되나요?

A

☞ '시스템 업체 소속 전산담당자'는 시스템 확인 절차(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외의 모든 인증평가 지표 확인 및 총평 시 참석하실 수 없으며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해당 훈련기관이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시스템 확인 후 '시스템 업체 소속 전산담당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0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중 LMS 모듈이 '각각의 전용 모듈'이어야 하나요?

A

☞ .(관련 요건)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추는 것
- '각각의 전용 모듈'이라는 것의 의미는 각 모듈별(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로그인 URL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51

원격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KSQA홈페이지에 안내된 '2022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 과정심사는 HRD-Net심사평가 시스템이 아닌 e-simsa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원격훈련과정 심사 관련 공고문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우수훈련기관 관련

Q52 우수훈련기관 선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아래의 우수훈련기관의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각 영역별 배점의 75% 이상 획득
- ② 기관건전성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인 기관
- ③ 2020.1.1.~우수훈련기관 최종 선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사회적 물의 등 발생 이력이 없는 기관
- ④ 2019~2021년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이력이 없는 기관
- ⑤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된 기관

Q53 우수훈련기관이 선정 취소될 경우, 등급 조정 및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 우수훈련기관 선정 이후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선정 취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취소(일반 3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심사평가를 통해 우수훈련기관이 취소되어 일반 3년 인증으로 등급이 조정될 경우, 우수훈련기관의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 조정되고, 일반 3년 인증등급(유효기간 : 2023.1.1.~2025.12.31.)이 부여됩니다.

II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관련 FAQ

1. 보수교육 대상 및 종류

Q1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20. 9. 29.)),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2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나요?

A ☞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매년 1.1.~12.31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강의 일수 및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연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3 보수교육은 매년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A ☞ 훈련교·강사마다 연간 강의 일수 및 강의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이 달라 집니다.
1. 훈련 교강사 : 기초교육 2시간 이상
2. 연간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 기본교육12시간 이상 기본교육의 경우 전문교육, 융합교육 이수시간을 포함하여 인정 가능하며 기본교육 12시간을 이수한 경우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Q4 보수교육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 A**
- ☞ 1. **기초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2. **기본교육** :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3. **전문교육** :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4. **융합교육** :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Q5 모든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교·강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A**
- ☞ 다음 각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
 - 3. 일반고 특화훈련
 - 4. 사업주 위탁훈련
 - 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과정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경우 기본교육을 미적용함
- 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 2. 인터넷원격·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

Q6 보수교육 실시 기관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 ☞ 보수교육과 관련된 상세 일정 및 안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041-521-8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2. 훈련과정 심사 시 교·강사 보수교육 실적 반영

Q7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접수 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훈련교·강사를 훈련과정 심사에 넣을 수 있나요?

A

☞ 훈련교·강사가 2022년 보수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정심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2. 9.30.까지 필수 보수교육 미이수 시 '조건부 적합' 판정하며,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에서 2022.9.30. 이후 2022년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15일 및 140시간 초과)가 발생할 경우 2022.12.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수 시 과정 선정 취소할 수 있음)(계획 조정 공고문 15쪽 참조).**

<훈련교·강사의 참여 시간별 필수 보수교육>

구분	훈련교강사	15일 초과 및 140시간 초과 훈련 참여 이력 강사
보수교육	기초교육(2시간)	기본교육(12시간)

* 기본교육(12시간)을 이수한 경우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운영규정 제4조)

Q8

2022년 심사를 신청한 훈련과정의 교·강사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훈련교·강사 조건부 항목을 종합판정목록에서 확인하시고,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훈련교·강사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타 조건부(훈련시설 및 장비, 교재 등) 항목과 달리 별도 조건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개발원에서 해당 교·강사의 이수처리 여부를 확인 후 심평원에서 최종 적합 판정 예정입니다.

Q9

2022년 심사를 신청한 훈련과정의 교·강사가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발표일 이후 강의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과정심사 결과 공고 시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이라도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강사가 2022.12.31.까지 기초 또는 기본 교육대상이 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10

2022년 심사에 신청한 훈련교·강사가 2022.12.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 2022년 과정심사에 참여한 훈련과정에 포함된 모든 훈련교·강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강사 중 1명이라도 2022.12.31.까지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훈련교·강사는 기초교육 2시간 이상 / 연간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교·강사는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3. 교강사 변경 신청 및 실시 신고

Q11

전년도에 15일 또는 140시간 초과된 강의실적을 가진 훈련교·강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강사가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변경인정 및 실시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 훈련교·강사가 전년도(2021년) 강의실적에 따른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기초교육(2시간)을 이수한 이후에 변경인정 및 실시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실시신고 및 변경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한고원에 전화(1577-7114)하셔서 오류사항에 대해 문의 후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

훈련교·강사의 결혼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5일 간 임시 훈련교·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시 훈련교·강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 기존 훈련교·강사가 예비군 훈련, 결혼 등에 따른 임시 훈련교·강사(NCS확인강사, 훈련기관등록강사 등)는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Q13

2022년 훈련교·강사 보수교육(기초, 기본, 전문, 융합)교육에 대한 상세한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종류별 교육 일정 및 상세 내용은 능력개발원으로(041-521-8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